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72 호 2026. 7. 30.(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63호[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제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64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50)].....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65호[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97호[「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04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05호[2027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3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06호[도로점용(굴착)변경 허가 공고 (허가26-22)]..... 10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09호[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문 공시송달공고]..... 10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10호[도로점용(굴착) 변경허가 공고 (허가25-61)]..... 105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63호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제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북구 지역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개발제한구역 제외)

(단위 : 원/㎡)

지 목	평균공시지가	지 목	평균공시지가	지 목	평균공시지가
전	275,513	주 차 장	634,747	수도용지	114,128
답	164,582	주유소용지	1,136,465	공 원	169,495
과 수 원	236,647	창고용지	723,169	체육용지	537,130
목장용지	170,738	도 로	238,090	유 원 지	159,500
임 야	13,671	철도용지	101,868	종교용지	636,877
광 천 지	-	제 방	89,569	사 적 지	117,896
염 천	-	하 천	63,222	묘 지	141,282
대	1,062,323	구 거	106,198	잡 종 지	406,965
공장용지	379,433	유 지	117,422		
학교용지	798,993	양 어 장	239,01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6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박경*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4길 15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m ²
점 용 기 간	○ 2026. 8. 4.(토), 8.(토) 15:00 ~ 19:0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65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호계동 500-1	당수골길 40	2026. 7. 29.	2026. 7. 30.	2011. 4. 6.	옛 지명인 당수골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호계동 987-8	당수골9길 10	2026. 7. 29.	2026. 7. 30.	2017. 5. 4.	옛 지명인 당수골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중산동 339-2	갯안2길 60	2026. 7. 29.	2026. 7. 30.	2004. 8. 9.	옛 지명인 갯안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연암동 284-16	연암18길 7	2026. 7. 29.	2026. 7. 30.	2004. 1. 5.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가대서길 56-9	2026. 1. 6.	건물멸실	철거
갯골1길 4	2023. 12. 4.	건물멸실	철거
당수골길 40	2026. 7. 27.	건물멸실	철거 후 신축
버딩길 45-13	2026. 1. 22.	건물멸실	철거 후 신축
수동중앙길 6	2026. 6. 29.	건물멸실	도로개설
수동중앙길 9	2026. 7. 15.	건물멸실	노후건물
연암18길 7	2026. 6. 9.	건물멸실	철거 후 신축
호계4길 5-1	2025. 10. 14.	건물멸실	도로개설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호계7길 69	2026. 1. 16.	건물멸실	노후건물
호계로 141	2026. 4. 28.	건물멸실	노후건물
갯안2길 60	2026. 7. 29.	건물멸실	철거 후 신축
달천진덕골길 53-1	2026. 6. 10.	건물멸실	철거 후 신축
호계로 226-4	2025. 10. 14.	건물멸실	도로개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997호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3에 따른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9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 및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명칭 :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건설과)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진장동, 화봉동 일원

○ 사업면적 : 80,153m²

○ 사업규모

- 하 천 : 하천정비 2km, 교량재가설 1개소 및 철거 1개소 등
- 배 수 장 : 진장펌프장 증설(Q=600m³/min), 연암지구 펌프설치(Q=6.5m³/min@2)
- 우수관로 : 우수관거개선 1.4km, 고지배수로 1.0km, 울산공항 수로정비 0.72km
- 예·경보 : 수위계 및 CCTV(1개소)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수립일로부터 48개월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사시행

○ 사업의 규모

명촌 지구	사업 면적	전체 80,153m ²							
	토지 이용 현황 (m ²)	전·과	답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구거	기타
		920	26,367	-	1,519	6,437	20,253	13,674	10,98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장소)

- 열람기간 :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8월 14일(15일간)
- 열람방법 : 아래의 장소에서 열람자료(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등) 열람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2층(연암동))

8. 주민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 제출기간 :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열람기간 종료일까지
- 제출장소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8193)

9.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시 북구 건설과(052-24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997호, 사업인정관련)

사	업	명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	업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진장동 등 일원		
사	업	시	행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의	견	제	출	자	(성명)	(연락처)
의견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올해 올해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지 장 물 조 서

공시명 : 영촌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1-24	비닐하우스	㎡	34		울산광역시	
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수목	주	30		국(농림축산식품부)	
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창고	㎡	10		국(농림축산식품부)	
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비닐하우스	㎡	51		국(농림축산식품부)	
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창고	㎡	15		국(농림축산식품부)	
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창고	㎡	14		국(농림축산식품부)	
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창고	㎡	5		국(농림축산식품부)	
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웬스	M	18		국(농림축산식품부)	
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수목	주	40		국(농림축산식품부)	
1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가드레일	M	13		국(농림축산식품부)	
1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한전주	본	1		국(농림축산식품부)	
1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통신주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1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변압기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1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4-27	통신맨홀	EA	1		울산광역시	
1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4-24	비닐하우스	㎡	61	울산 연암동 381-*	최*석	
1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4-34	FRP물탱크	EA	3	울산 연암동 381-*	최*석	
1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4-34	한전주	본	1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1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4-27	통신주	EA	2		울산광역시	
1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4-27	오수맨홀	EA	1		울산광역시	
2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4-27	통신주	EA	2		울산광역시	
2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4-33	그물망웬스	M	93		울산광역시	
2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4-27	가드레일	M	201		울산광역시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영촌지구 풍수해생환경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2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2-3	오수맨홀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2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2-3	통신주	EA	2		국(농림축산식품부)	
2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5-26	웬스	M	109		울산광역시	
2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5-24	통신주	EA	2		울산광역시	
2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5-24	통신주	EA	2		울산광역시	
2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5-24	현수막거치대	EA	2		울산광역시	
2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경찰맨홀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3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현수막거치대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3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5-21	FAP물탱크	EA	1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286-*	이*선	
3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7-12	반사경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3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7-12	표지판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3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3-5	한전주	본	1		국(농림축산식품부)	
3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15	웬스(대문)	M	3	울산 북구 달천동 207-**	한*선	
3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15	광고판	EA	1	울산 북구 달천동 207-**	한*선	
3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15	한전주	본	1	울산 북구 달천동 207-**	한*선	
3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15	한전주	본	1	울산 북구 달천동 207-**	한*선	
3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15	웬스	M	105	울산 북구 달천동 207-**	한*선	
4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15	화장실	m ²	8	울산 북구 달천동 207-**	한*선	
4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15	창고	m ²	317	울산 북구 달천동 207-**	한*선	
4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통신주	EA	2		국(농림축산식품부)	
4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변압기	EA	3		국(농림축산식품부)	
4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한전맨홀	EA	2		국(농림축산식품부)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영촌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4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경찰맨홀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4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통신맨홀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4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통신주	EA	3		국(농림축산식품부)	
4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한진주	본	1		국(농림축산식품부)	
4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가드레일	M	85		국(농림축산식품부)	
5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	통신주	EA	2		국(농림축산식품부)	
5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799-5	경찰맨홀	EA	1		국(국토교통부)	
5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4	비석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5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4	수목	주	2		국(농림축산식품부)	
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9-4	수목	주	10		국(농림축산식품부)	
5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23	반사경	EA	1		울산광역시	
5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15	수목	주	906	울산 북구 달천동 207-**	한*선	
5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14	창고	㎡	2	울산 화봉동 8**	김*욱	
5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14	수목	주	10	울산 화봉동 8**	김*욱	
5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19	그물망헨스	M	48		국(국토교통부)	
6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8-7	제어함	EA	1		국(국토교통부)	
6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8-7	확성기	EA	1		국(국토교통부)	
6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8-7	담장	M	2		국(국토교통부)	
6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8-7	초소	㎡	20		국(국토교통부)	
6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2	한진주	본	1		국(농림축산식품부)	
6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9-1	비닐하우스	㎡	22	울산 영촌동 700-*	최*태	
6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9-1	비닐하우스	㎡	90	울산 영촌동 700-*	최*태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영촌지구 풍수해생태권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6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9-1	창고	㎡	3	울산 영촌동 700-*	최*태	
6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9-1	수목	주	12	울산 영촌동 700-*	최*태	
6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2-1	비닐하우스	㎡	41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로 15, 41*동 ***호(약사 동,***2차)	장*섭	
7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2-1	헨스	M	9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로 15, 41*동 ***호(약사 동,***2차)	장*섭	
7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2-30	FRP물탱크	EA	1		울산광역시	
7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2-21	헨스	M	21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로 15, 41*동 ***호(약사 동,***2차)	장*섭	
7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2-21	수목	주	20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로 15, 41*동 ***호(약사 동,***2차)	장*섭	
7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컨테이너	㎡	18		국(농림축산식품부)	
7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헨스	M	47		국(농림축산식품부)	
7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3-2	창고	㎡	16		울산광역시	
7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3-2	수목	주	34		울산광역시	
7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FRP물탱크	EA	4		국(농림축산식품부)	
7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한전주	본	1		국(농림축산식품부)	
8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수목	주	5		국(농림축산식품부)	
8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40	헨스(대문)	M	7		국	
8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77-6	전석	㎡	2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8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6-2	보안등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8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6-2	수목	주	13		국(농림축산식품부)	
8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3	표지판	EA	1		울산광역시	
8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배수장	㎡	2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8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한전주	본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8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한전주	본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영촌지구 통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8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통신주	EA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컨테이너	㎡	1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철골	㎡	4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보안등	EA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헬스	M	15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헬스	M	1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보안등	EA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5	보안등	EA	1	울산 중구 옥교동 313-*	김*식	
9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5	담장	M	23	울산 중구 옥교동 313-*	김*식	
9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5	수목	주	10	울산 중구 옥교동 313-*	김*식	
9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5	헬스	M	13	울산 중구 옥교동 313-*	김*식	
10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47-1	헬스	M	4		울산광역시북구	
10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47-1	수목	주	3		울산광역시북구	
10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6-2	컨베이어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10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6-2	보안등	EA	1		국(농림축산식품부)	
10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보안등	EA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0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제진기	EA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0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5	보안등	EA	1	울산 중구 옥교동 313-*	김*식	
10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정경발판	EA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0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	보안등	EA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0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2	보안등	EA	1		국(국토교통부)	
11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5	수목	주	11	울산 중구 옥교동 313-*	김*식	

지 장 물 조 서

공시명 : 영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11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4	보안등	EA	1		국(국토교통부)	
11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2	경찰맨홀	EA	1		국(국토교통부)	
11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3	기상관측기	EA	1		국(국토교통부)	
11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2	수목	주	528		국(국토교통부)	
11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4	보안등	EA	1		국(국토교통부)	
11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3	보안등	EA	1		국(국토교통부)	
11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4	보안등	EA	1		국(국토교통부)	
11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2	초소	㎡	80		국(국토교통부)	
11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2	컨테이너	㎡	10		국(국토교통부)	
12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2	컨테이너	㎡	5		국(국토교통부)	
12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2	기상관측기	EA	1		국(국토교통부)	
12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2	제어함	EA	1		국(국토교통부)	
12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2	보안등	EA	1		국(국토교통부)	
12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15	창고	㎡	7	울산 중구 옥교동 313-*	김*식	
12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2	웬스(대문)	M	5		국(국토교통부)	
12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2-1	수목	주	30		울산광역시	
12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2-1	수목	주	20		울산광역시	
12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67-12	변압기	EA	1		울산광역시	
12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82-1	오수맨홀	EA	1		울산광역시	
13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68-1	가로등	EA	1		국(건설부)	
13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342	통신맨홀	EA	1		국(건설부)	
13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67-1	수목	주	1		울산광역시북구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명촌지구 풍수해생환경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13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67-1	수목	주	4		울산광역시북구	
13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67-1	수목	주	1		울산광역시북구	
13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84-2	한전맨홀	EA	1		국(건설부)	
13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66	헨스	M	2		울산광역시북구	
13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68-1	수목	주	10		국(건설부)	
13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78-1	수목	주	13		울산광역시	
13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78-1	헨스	M	2		울산광역시	
14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38-7	가스밸브	EA	1		국(건설부)	
14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06-4	제수변	EA	1		국(기획재정부)	
14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7-2	상수맨홀	EA	1		국(기획재정부)	
14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7-2	통신맨홀	EA	1		국(기획재정부)	
14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7-2	볼라드	EA	1		국(기획재정부)	
14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5-2	제수변	EA	1		울산광역시	
14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5-2	상수맨홀	EA	1		울산광역시	
14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5-2	제수변	EA	1		울산광역시	
14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5-2	오수맨홀	EA	1		울산광역시	
14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594-1	가스밸브	EA	1		울산광역시	
15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342-44	헨스	M	18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15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33-6	수목	주	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15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33-2	수목	주	1		울산광역시	
15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11	통신맨홀	EA	1		국(건설부)	
15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11	제수변	EA	1		국(건설부)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영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15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11	제수변	EA	1		국(건설부)	
15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3	제수변	EA	1		국(기획재정부)	
15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3	제수변	EA	1		국(기획재정부)	
15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3	상수맨홀	EA	1		국(기획재정부)	
15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13	제수변	EA	1		국(건설부)	
16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13	제수변	EA	1		국(건설부)	
16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13	제수변	EA	1		국(건설부)	
16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1-27	블라드	EA	3		국(건설부)	
16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3	광고판	EA	1		울산광역시	
16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2-2	한전맨홀	EA	2	동동	김*석	
16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3	블라드	EA	1		울산광역시	
16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5	수목	주	5		울산광역시	
16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5	수목	주	1		울산광역시	
16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47-10	수목	주	25		국(국토교통부)	
16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47-10	헨스	M	6		국(국토교통부)	
17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47-10	반사경	EA	1		국(국토교통부)	
17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47-10	담장	M	5		국(국토교통부)	
17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4	통신맨홀	EA	1		국(국토교통부)	
17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352-1	블라드	EA	2		국(국토교통부)	
17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8	한전주	본	1		국(국토교통부)	
17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8	블라드	EA	1		국(국토교통부)	
17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7	화단경계목	M	93		국(국토교통부)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17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7	한전주	본	1		국(국토교통부)	
17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7	수목	주	33		국(국토교통부)	
17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7	한전주	본	1		국(국토교통부)	
18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8	수목	주	3		국(국토교통부)	
18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8	한전주	본	1		국(국토교통부)	
18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8	한전주	본	1		국(국토교통부)	
18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8	한전주	본	1		국(국토교통부)	
18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8	한전주	본	1		국(국토교통부)	
18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8	한전주	본	1		국(국토교통부)	
18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8	한전주	본	1		국(국토교통부)	
18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8	볼라드	EA	2		국(국토교통부)	
18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68	표지판	EA	1		국(국토교통부)	
18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73	표지판	EA	1		국(건설부)	
19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73	표지판	EA	1		국(건설부)	
19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73	표지판	EA	1		국(건설부)	
19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73	오수맨홀	EA	1		국(건설부)	
19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81-9	표지판	EA	1		울산광역시	
19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73	CCTV	EA	1		국(건설부)	
19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73	차단봉	EA	1		국(건설부)	
19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73	표지판	EA	1		국(건설부)	
19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73	표지판	EA	1		국(건설부)	
19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81-6	반사경	EA	1		국(국토교통부)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영촌지구 풍수해생태권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19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81-6	볼라드	EA	3		국(국토교통부)	
20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81-6	표지판	EA	1		국(국토교통부)	
20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81-6	표지판	EA	1		국(국토교통부)	
20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93	수목	주	30		국(국토교통부)	
20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81-6	반사경	EA	1		국(국토교통부)	
20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93	교량피아	EA	2		국(국토교통부)	
20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93	헬스	M	26		국(국토교통부)	
20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81-6	차도용헬스	M	172		국(국토교통부)	
20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05-12	수목	주	24		울산광역시	
20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볼라드	EA	2		국(건설부)	
20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오수맨홀	EA	1		국(건설부)	
21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제수변	EA	1		국(건설부)	
21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한전맨홀	EA	1		국(건설부)	
21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한전맨홀	EA	1		국(건설부)	
21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한전맨홀	EA	1		국(환경부)	
21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3	볼라드	EA	5		국(건설부)	
21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83-4	교량피아	EA	2		국(국토교통부)	
21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83-4	헬스	M	14		국(국토교통부)	
21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86-5	수목	주	70		울산광역시	
21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수목	주	11		국(건설부)	
21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한전주	본	1		국(건설부)	
22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한전주	본	1		국(건설부)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22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우수맨홀	EA	1		국(건설부)	
22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우수맨홀	EA	1		국(건설부)	
22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오수맨홀	EA	1		국(건설부)	
22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CCTV	EA	1		국(환경부)	
22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한전주	본	1		국(건설부)	
22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1	표지판	EA	1		국(건설부)	
22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제수변	EA	1		국(건설부)	
22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1	우수맨홀	EA	1		국(건설부)	
22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제수변	EA	1		국(건설부)	
23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1	차단봉	EA	1		국(건설부)	
23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제수변	EA	1		국(건설부)	
23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블라드	EA	4		국(건설부)	
23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오수맨홀	EA	1		국(건설부)	
23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블라드	EA	1		국(건설부)	
23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한전주	본	1		국(건설부)	
23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블라드	EA	1		국(건설부)	
23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오수맨홀	EA	1		국(건설부)	
23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통신맨홀	EA	1		국(건설부)	
23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반사경	EA	1		국(환경부)	
24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우수맨홀	EA	1		국(건설부)	
24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오수맨홀	EA	1		국(건설부)	
24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수목	주	34		국(환경부)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영촌지구 풍수해생환경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24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2	우수맨홀	EA	1		국(건설부)	
24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제수변	EA	1		국(환경부)	
24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제수변	EA	1		국(환경부)	
24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한전주	본	1		국(환경부)	
24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우수맨홀	EA	1		국(환경부)	
24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한전주	본	1		국(환경부)	
24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표지판	EA	1		국(환경부)	
25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우수맨홀	EA	1		국(환경부)	
25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4	상수맨홀	EA	1		국(건설부)	
25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4	한전주	본	1		국(건설부)	
25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4	통신맨홀	EA	1		국(건설부)	
25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4	가로등	EA	1		국(건설부)	
25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4	한전맨홀	EA	1		국(건설부)	
25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4	한전주	본	1		국(건설부)	
25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4	통신주	EA	1		국(건설부)	
25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우수맨홀	EA	1		국(환경부)	
25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우수맨홀	EA	1		국(환경부)	
26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우수맨홀	EA	1		국(환경부)	
26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우수맨홀	EA	1		국(환경부)	
26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표지판	EA	1		국(환경부)	
26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우수맨홀	EA	1		국(환경부)	
26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	우수맨홀	EA	1		국(환경부)	

지 장 물 조 서

공시명 : 영촌지구 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26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63-2	오수맨홀	EA	1		국(환경부)	
26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63-2	오수맨홀	EA	1		국(환경부)	
26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63-2	오수맨홀	EA	1		국(환경부)	
26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11-1	오수맨홀	EA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6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63-2	오수맨홀	EA	1		국(환경부)	
27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10-4	오수맨홀	EA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7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30-23	오수맨홀	EA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7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12-2	오수맨홀	EA	1		국(기획재정부)	
27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11-2	오수맨홀	EA	1		국(기획재정부)	
27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11-2	오수맨홀	EA	1		국(기획재정부)	
27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0-4	용배수관	M	10		국(농림축산식품부)	
27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2-25	용배수로	M	14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7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7-11	용배수관	M	18		국(농림축산식품부)	
27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4-35	용배수로	M	9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7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2-2	용배수로	M	5		국(농림축산식품부)	
28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2-4	용배수관	M	10		국(농림축산식품부)	
28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67-3	용배수관	M	22		국(농림축산식품부)	
28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19	용배수로	M	42		국(국토교통부)	
28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7-26	용배수로	M	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8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3	용배수로	M	2		국(국토교통부)	
28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2	용배수로	M	18		국(농림축산식품부)	
28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용배수로	M	34		국(농림축산식품부)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연 번	물 건 의 소 재 지				물건명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28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용배수로	M	115		국(농림축산식품부)	
28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날개벽	식	1		국(농림축산식품부)	
28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용배수로	M	138		국(농림축산식품부)	
29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용배수로	M	43		국(농림축산식품부)	
29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용배수로	M	120		국(농림축산식품부)	
29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18	날개벽	식	1		국(국토교통부)	
29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77-6	용배수로	M	4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9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77-6	집수정	EA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9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6-2	용배수로	M	29		국(농림축산식품부)	
29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47-1	용배수로	M	9		울산광역시북구	
29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47-1	날개벽	식	1		울산광역시북구	
29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28	배수관	EA	3		국(환경부)	
29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6-2	용배수로	M	49		국(농림축산식품부)	

편입 토지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공사명 : 영촌지구 풍수해생물관 종합정비사업

구 역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적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구 역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적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1-23	담	648	306		울산광역시			26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4-34	담	51	51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1-20	담	1,721	920		울산광역시			27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4-30	담	129	129		울산광역시		
3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1-21	구	36	8		국(국토교통부)			28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4-24	담	727	21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81-1	최+석		
4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1-25	담	1,178	221		울산광역시			29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4-31	담	520	520		울산광역시		
5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1-24	담	47	20		울산광역시			30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4-35	담	104	104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6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70-4	구	159	142		국(농림축산식품부)			31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4-27	담	1,065	890		울산광역시		
7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69	전	6,219	3,114		국(농림축산식품부)			32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4-25	담	212	166		울산광역시		
8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2-21	담	656	533		울산광역시			33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4-33	담	1,955	1,955		울산광역시		
9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2-22	담	412	412		울산광역시			34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4-26	담	130	130		울산광역시		
10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2-23	담	1,642	1,642		울산광역시			35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72-3	구	100	91		국(농림축산식품부)		
11	울산시	북구	화봉동	732	종	533	77	부산 금정구 장전동 355-1	김+희			36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72-4	구	117	117		국(농림축산식품부)		
12	울산시	북구	화봉동	1390-37	전	37	11		국(기회채널부)			37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72-2	구	1,980	30		국(농림축산식품부)		
13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2-25	담	35	35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38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5-24	담	1,660	1,569		울산광역시		
14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3	담	141	5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9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5-25	담	87	87		울산광역시		
15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2-17	담	258	1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1길 11(연암동)	김+남			40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5-26	담	1,922	1,922		울산광역시		
16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2-26	담	142	25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41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5-21	전	2,268	399	울산광역시 북구 석성동 286-1	이+선		
17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3-3	담	506	17		울산광역시			42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67-9	구	36	36		국(농림축산식품부)		
18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2-20	담	38	38		울산광역시			43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67-12	구	45	45		국(농림축산식품부)		
19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67-11	구	59	59		국(농림축산식품부)			44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67-3	구	953	15		국(농림축산식품부)		
20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67-8	구	15	15		국(농림축산식품부)			45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73-4	도	68	68		국(농림축산식품부)		
21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67-2	구	945	4		국(농림축산식품부)			46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73-5	도	96	96		국(농림축산식품부)		
22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71-5	도	110	110		국(농림축산식품부)			47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73-3	도	2,375	25		국(농림축산식품부)		
23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71-4	도	45	45		국(농림축산식품부)			48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16	담	201	201		울산광역시		
24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4-32	담	52	52		울산광역시			49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17	담	1,111	1,111		울산광역시		
25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4-28	구	482	2		국(국토교통부)			50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15	전	3,002	349	울산 북구 달천동 207-1	한+선		

구 역	도 지 소 재 지			지 번	지 폭 (m)	지 적 (㎡)	관입면적 (㎡)	도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구 역	도 지 소 재 지			지 번	지 폭 (m)	지 적 (㎡)	관입면적 (㎡)	도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51	울산시	북구	화봉동	800-4	도	20	9	화봉동 9-*	한*희					76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62-1	담	442	21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로 1*, 4-*, 동 7-*, 8(약사동, *, ** 2차)	장*섭				
52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23	담	479	305		울산광역시					77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62-30	도	19,315	4		울산광역시				
53	울산시	북구	화봉동	799-4	도	23	23	화봉동 9-*	한*희					78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62-21	담	269	13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로 15, 4-*, 동 7-*, 8(약사동, *, ** 2차)	장*섭	울산광역시 중구 변영로 56(4(남의동))	울산광역시 중구 변영로 56(4(남의동))	중흥산업협동조합	군지대권자
54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24	담	303	85		울산광역시					79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83-2	제	9,083	305		울산광역시				
55	울산시	북구	화봉동	799-1	도	37	22	화봉동 9-*	한*희					80	울산시	북구	전장동	1018	구	493	13		국(국토교통부)				
56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69-3	제	6,316	17		국(농림축산식품부)					81	울산시	북구	화봉동	1259-4	도	496	2	교동 2-*	박*영				
57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21	제	401	202		국(국토교통부)					82	울산시	북구	전장동	1016-1	도	422	2		국(국토교통부)				
58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14	담	1,612	47	화봉동 8-*	김*옥					83	울산시	북구	전장동	77-4	도	126	5		울산광역시				
59	울산시	북구	화봉동	799-6	제	17	9		국(국토교통부)					84	울산시	북구	전장동	1040	도	195	4		국				
60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28	담	158	9	천리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85	울산시	북구	전장동	77-10	도	84	4		울산광역시북구				
61	울산시	북구	화봉동	799-5	제	26	12		국(국토교통부)					86	울산시	북구	전장동	73-7	도	890	9		국(국토교통부)				
62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13	담	2,845	11	울산 남구 신철동 719-***	이*준 외 2명	울산광역시 동구 팔어진순환도로 685	팔어진농업협동조합	군지대권자		87	울산시	북구	전장동	77-6	구	223	8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63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29	담	3	3	천리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88	울산시	북구	전장동	1047-1	유	3,008	132		울산광역시북구				
64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69-4	제	1,859	124		국(농림축산식품부)					89	울산시	북구	전장동	83	제	2,026	495		울산광역시				
65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26	담	60	15	천리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90	울산시	북구	전장동	126-2	구	600	281		국(농림축산식품부)				
66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19	제	410	217		국(국토교통부)					91	울산시	북구	전장동	116	대	1,853	3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 3층 30-8(성안동)	김*태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7(무거동)(달동지침)	중앙농업협동조합	군지대권자	
67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7-18	제	364	184		국(국토교통부)					92	울산시	북구	전장동	1028	천	132,301	392		국(환경부)				
68	울산시	북구	화봉동	1009-10	제	150	38		국(국토교통부)					93	울산시	북구	전장동	120-15	담	709	709	울산 중구 육교동 313-*	김*식 외 1명 (국(국토교통부)				
69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48-1	제	216	28		국(국토교통부)					94	울산시	북구	전장동	120-1	대	1,324	1,32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70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77	구	2,954	520		국(농림축산식품부)					95	울산시	북구	전장동	120-2	담	3,690	3,690		국(국토교통부)				
71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82	도	695	258		국(농림축산식품부)					96	울산시	북구	전장동	120-3	담	2,177	2,177		국(국토교통부)				
72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58-7	담	3,412	13		국(국토교통부)					97	울산시	북구	전장동	1004	도	9,050	71		국(국토교통부)				
73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77-3	구	749	5		국(국토교통부)					98	울산시	북구	전장동	120-4	담	2,211	2,211		국(국토교통부)				
74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82-1	도	81	15		국(국토교통부)					99	울산시	북구	전장동	85	도	604	38		울산광역시				
75	울산시	북구	화봉동	1159-1	담	4,665	49	밀촌동 700-*	최*배					100	울산시	북구	현암동	968-1	도	9,332	49		국(건설부)				

구 역	토 지 소 제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권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구 역	토 지 소 제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권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01	울산시	북구	연암동	978-5	답	77	4		울산광역시					126	울산시	북구	연암동	891-3	도	311	83		국(건설부)				
102	울산시	북구	연암동	978-1	답	2,766	32		울산광역시					127	울산시	북구	연암동	915-2	도	1,365	52		울산광역시				
103	울산시	북구	진장동	288-1	천	14,137	161		울산광역시					128	울산시	북구	연암동	893-3	도	86	12		시·장				사정토지
104	울산시	북구	진장동	282-4	공	1,001	45		울산광역시					129	울산시	북구	연암동	917-2	도	433	80		국(기획재정부)				
105	울산시	북구	진장동	282-1	대	86,101	65		울산광역시					130	울산시	북구	연암동	1342-27	도	536	23		국(건설부)				
106	울산시	북구	진장동	282-3	구	951	17		울산광역시 북구					131	울산시	북구	연암동	899-1	도	20	6		국(기획재정부)				
107	울산시	북구	연암동	966	대	2,221	45		울산광역시 북구					132	울산시	북구	연암동	899-2	도	221	23		울산광역시				
108	울산시	북구	연암동	967-6	답	132	35		울산광역시					133	울산시	북구	연암동	916-5	도	380	70		국(기획재정부)				
109	울산시	북구	연암동	1266-16	도	545	14		울산광역시					134	울산시	북구	연암동	901-4	도	293	45		울산광역시				
110	울산시	북구	연암동	1266-28	답	42	14		울산광역시					135	울산시	북구	연암동	906-4	도	95	19		국(기획재정부)				
111	울산시	북구	연암동	1273-1	구	273	1		국(농림축산식품부)					136	울산시	북구	연암동	838-7	도	257	116		국(건설부)				
112	울산시	북구	연암동	967-1	공	1,918	106		울산광역시 북구					137	울산시	북구	연암동	902-5	도	425	66		울산광역시				
113	울산시	북구	연암동	1266-29	도	56	2		울산광역시					138	울산시	북구	연암동	905-7	도	541	102		울산광역시				
114	울산시	북구	연암동	884-5	도	374	39		울산광역시					139	울산시	북구	연암동	903-3	도	35	1		울산광역시				
115	울산시	북구	연암동	883-1	도	40	16		국(건설부)					140	울산시	북구	연암동	896-4	갑	893	38		울산광역시				
116	울산시	북구	연암동	1342	도	1,363	128		국(건설부)					141	울산시	북구	연암동	1342-30	도	46	9		국(건설부)				
117	울산시	북구	연암동	883-2	도	143	24	연암동 8**	이·복					142	울산시	북구	연암동	832-10	도	402	72		울산광역시				
118	울산시	북구	연암동	884-1	도	36	16		국(건설부)					143	울산시	북구	연암동	835-1	도	384	53		울산광역시				
119	울산시	북구	연암동	883-3	도	46	16		국(건설부)					144	울산시	북구	연암동	834-3	대	164	46		울산광역시				
120	울산시	북구	연암동	884-2	도	360	29		국(건설부)					145	울산시	북구	연암동	1342-32	도	61	14		국(건설부)				
121	울산시	북구	연암동	882-1	도	1,207	51		국(건설부)					146	울산시	북구	연암동	594-1	도	1,042	231		울산광역시				
122	울산시	북구	연암동	889-1	도	198	48	회봉동	배·주			사정토지		147	울산시	북구	연암동	1409	도	79	26		울산광역시				
123	울산시	북구	연암동	1267-12	도	1,030	45		울산광역시					148	울산시	북구	연암동	1406	도	925	6		울산광역시				
124	울산시	북구	연암동	891-1	도	175	54	연암동 8**	김·호					149	울산시	북구	연암동	827-1	도	660	25		울산광역시				
125	울산시	북구	연암동	838-8	도	1,139	111		국(건설부)					150	울산시	북구	연암동	827-13	도	851	146		국(건설부)				

구 역	도 지 소 제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관입면적 (㎡)	도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구 역	도 지 소 제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관입면적 (㎡)	도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51	울산시	북구	현암동	833-6	대	324	28	경상남도 진주시 송이로 19(송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176	울산시	북구	현암동	747-9	철	286	39	국(국토교통부)					
152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1-9	대	69	8		울산광역시					177	울산시	북구	현암동	746-1	철	3,306	608	국(국토교통부)					
153	울산시	북구	현암동	1342-44	도	9	4	경상남도 진주시 송이로 19(송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178	울산시	북구	현암동	1350-4	철	372	41	국(국토교통부)					
154	울산시	북구	현암동	1342-54	도	2	1		국(건설부)					179	울산시	북구	현암동	754	철	327	154	국(국토교통부)					
155	울산시	북구	현암동	827-3	도	182	42		국(기획재정부)					180	울산시	북구	현암동	1352-1	철	433	40	국(국토교통부)					
156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1-29	도	23	2		울산광역시					181	울산시	북구	효문동	867	철	1,613	611	국(국토교통부)					
157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1-21	도	784	25		울산광역시					182	울산시	북구	효문동	868	철	26,179	3,171	국(국토교통부)					
158	울산시	북구	현암동	827-4	도	7	5		울산광역시					183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1-9	구	1,168	688	울산광역시					
159	울산시	북구	현암동	833-2	도	152	28		울산광역시					184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1-2	구	50	4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0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1-1	도	185	10		울산광역시					185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2-1	담	289	16	울산광역시					
161	울산시	북구	현암동	827-11	도	236	65		국(건설부)					186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2-4	구	16	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2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1-30	도	1	1		국(건설부)					187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2-7	철	13	13	국(국토교통부)					
163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2-1	도	721	16		울산광역시					188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1-11	철	85	85	국(국토교통부)					
164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1-15	도	83	5		국(건설부)					189	울산시	북구	진장동	1006	구	952	18	국(국토교통부)					
165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1-7	도	96	1	강원도 삼척시 도계리 383-1	배*길					190	울산시	북구	효문동	973	구	479	150	국(건설부)					
166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1-4	도	51	18	강원도 삼척시 도계리 383-1	배*길					191	울산시	북구	진장동	592-3	구	17	9	울산광역시					
167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2-2	도	474	48	동동	김*석			시원도지		192	울산시	북구	진장동	592-1	도	625	36	국(국토교통부)					
168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1-27	도	77	49		국(건설부)					193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2-5	구	3	3	울산시 중구 남제동 2**	홍*석				
169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2-6	도	26	4		국(건설부)					194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2-3	도	17	17	울산시 중구 남제동 2**	홍*석				
170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3	담	8,246	532		울산광역시					195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3-3	도	79	21	국(건설부)					
171	울산시	북구	현암동	1351-2	구	379	12		국(건설부)					196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3-7	구	3	3	울산광역시					
172	울산시	북구	현암동	845	담	11,966	717		울산광역시					197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1-10	구	131	11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73	울산시	북구	현암동	747-10	철	8,284	1,486		국(국토교통부)					198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3-5	관	284	2	울산광역시					
174	울산시	북구	현암동	777-2	전	145	4	울산광역시 중구 남제1길 10*, 111동 20*호 (남제동, 울산**** 라바드)	김*영 외 2인	울산 중구 북산동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6-10, 186-11, 186-12, 186-13, 186-14, 186-15, 186-16, 186-17, 186-18, 186-19, 186-20, 186-21, 186-22, 186-23, 186-24, 186-25, 186-26, 186-27, 186-28, 186-29, 186-30, 186-31, 186-32, 186-33, 186-34, 186-35, 186-36, 186-37, 186-38, 186-39, 186-40, 186-41, 186-42, 186-43, 186-44, 186-45, 186-46, 186-47, 186-48, 186-49, 186-50, 186-51, 186-52, 186-53, 186-54, 186-55, 186-56, 186-57, 186-58, 186-59, 186-60, 186-61, 186-62, 186-63, 186-64, 186-65, 186-66, 186-67, 186-68, 186-69, 186-70, 186-71, 186-72, 186-73, 186-74, 186-75, 186-76, 186-77, 186-78, 186-79, 186-80, 186-81, 186-82, 186-83, 186-84, 186-85, 186-86, 186-87, 186-88, 186-89, 186-90, 186-91, 186-92, 186-93, 186-94, 186-95, 186-96, 186-97, 186-98, 186-99, 186-100, 186-101, 186-102, 186-103, 186-104, 186-105, 186-106, 186-107, 186-108, 186-109, 186-110, 186-111, 186-112, 186-113, 186-114, 186-115, 186-116, 186-117, 186-118, 186-119, 186-120, 186-121, 186-122, 186-123, 186-124, 186-125, 186-126, 186-127, 186-128, 186-129, 186-130, 186-131, 186-132, 186-133, 186-134, 186-135, 186-136, 186-137, 186-138, 186-139, 186-140, 186-141, 186-142, 186-143, 186-144, 186-145, 186-146, 186-147, 186-148, 186-149, 186-150, 186-151, 186-152, 186-153, 186-154, 186-155, 186-156, 186-157, 186-158, 186-159, 186-160, 186-161, 186-162, 186-163, 186-164, 186-165, 186-166, 186-167, 186-168, 186-169, 186-170, 186-171, 186-172, 186-173, 186-174, 186-175, 186-176, 186-177, 186-178, 186-179, 186-180, 186-181, 186-182, 186-183, 186-184, 186-185, 186-186, 186-187, 186-188, 186-189, 186-190, 186-191, 186-192, 186-193, 186-194, 186-195, 186-196, 186-197, 186-198, 186-199, 186-200, 186-201, 186-202, 186-203, 186-204, 186-205, 186-206, 186-207, 186-208, 186-209, 186-210, 186-211, 186-212, 186-213, 186-214, 186-215, 186-216, 186-217, 186-218, 186-219, 186-220, 186-221, 186-222, 186-223, 186-224, 186-225, 186-226, 186-227, 186-228, 186-229, 186-230, 186-231, 186-232, 186-233, 186-234, 186-235, 186-236, 186-237, 186-238, 186-239, 186-240, 186-241, 186-242, 186-243, 186-244, 186-245, 186-246, 186-247, 186-248, 186-249, 186-250, 186-251, 186-252, 186-253, 186-254, 186-255, 186-256, 186-257, 186-258, 186-259, 186-260, 186-261, 186-262, 186-263, 186-264, 186-265, 186-266, 186-267, 186-268, 186-269, 186-270, 186-271, 186-272, 186-273, 186-274, 186-275, 186-276, 186-277, 186-278, 186-279, 186-280, 186-281, 186-282, 186-283, 186-284, 186-285, 186-286, 186-287, 186-288, 186-289, 186-290, 186-291, 186-292, 186-293, 186-294, 186-295, 186-296, 186-297, 186-298, 186-299, 186-300, 186-301, 186-302, 186-303, 186-304, 186-305, 186-306, 186-307, 186-308, 186-309, 186-310, 186-311, 186-312, 186-313, 186-314, 186-315, 186-316, 186-317, 186-318, 186-319, 186-320, 186-321, 186-322, 186-323, 186-324, 186-325, 186-326, 186-327, 186-328, 186-329, 186-330, 186-331, 186-332, 186-333, 186-334, 186-335, 186-336, 186-337, 186-338, 186-339, 186-340, 186-341, 186-342, 186-343, 186-344, 186-345, 186-346, 186-347, 186-348, 186-349, 186-350, 186-351, 186-352, 186-353, 186-354, 186-355, 186-356, 186-357, 186-358, 186-359, 186-360, 186-361, 186-362, 186-363, 186-364, 186-365, 186-366, 186-367, 186-368, 186-369, 186-370, 186-371, 186-372, 186-373, 186-374, 186-375, 186-376, 186-377, 186-378, 186-379, 186-380, 186-381, 186-382, 186-383, 186-384, 186-385, 186-386, 186-387, 186-388, 186-389, 186-390, 186-391, 186-392, 186-393, 186-394, 186-395, 186-396, 186-397, 186-398, 186-399, 186-400, 186-401, 186-402, 186-403, 186-404, 186-405, 186-406, 186-407, 186-408, 186-409, 186-410, 186-411, 186-412, 186-413, 186-414, 186-415, 186-416, 186-417, 186-418, 186-419, 186-420, 186-421, 186-422, 186-423, 186-424, 186-425, 186-426, 186-427, 186-428, 186-429, 186-430, 186-431, 186-432, 186-433, 186-434, 186-435, 186-436, 186-437, 186-438, 186-439, 186-440, 186-441, 186-442, 186-443, 186-444, 186-445, 186-446, 186-447, 186-448, 186-449, 186-450, 186-451, 186-452, 186-453, 186-454, 186-455, 186-456, 186-457, 186-458, 186-459, 186-460, 186-461, 186-462, 186-463, 186-464, 186-465, 186-466, 186-467, 186-468, 186-469, 186-470, 186-471, 186-472, 186-473, 186-474, 186-475, 186-476, 186-477, 186-478, 186-479, 186-480, 186-481, 186-482, 186-483, 186-484, 186-485, 186-486, 186-487, 186-488, 186-489, 186-490, 186-491, 186-492, 186-493, 186-494, 186-495, 186-496, 186-497, 186-498, 186-499, 186-500, 186-501, 186-502, 186-503, 186-504, 186-505, 186-506, 186-507, 186-508, 186-509, 186-510, 186-511, 186-512, 186-513, 186-514, 186-515, 186-516, 186-517, 186-518, 186-519, 186-520, 186-521, 186-522, 186-523, 186-524, 186-525, 186-526, 186-527, 186-528, 186-529, 186-530, 186-531, 186-532, 186-533, 186-534, 186-535, 186-536, 186-537, 186-538, 186-539, 186-540, 186-541, 186-542, 186-543, 186-544, 186-545, 186-546, 186-547, 186-548, 186-549, 186-550, 186-551, 186-552, 186-553, 186-554, 186-555, 186-556, 186-557, 186-558, 186-559, 186-560, 186-561, 186-562, 186-563, 186-564, 186-565, 186-566, 186-567, 186-568, 186-569, 186-570, 186-571, 186-572, 186-573, 186-574, 186-575, 186-576, 186-577, 186-578, 186-579, 186-580, 186-581, 186-582, 186-583, 186-584, 186-585, 186-586, 186-587, 186-588, 186-589, 186-590, 186-591, 186-592, 186-593, 186-594, 186-595, 186-596, 186-597, 186-598, 186-599, 186-600, 186-601, 186-602, 186-603, 186-604, 186-605, 186-606, 186-607, 186-608, 186-609, 186-610, 186-611, 186-612, 186-613, 186-614, 186-615, 186-616, 186-617, 186-618, 186-619, 186-620, 186-621, 186-622, 186-623, 186-624, 186-625, 186-626, 186-627, 186-628, 186-629, 186-630, 186-631, 186-632, 186-633, 186-634, 186-635, 186-636, 186-637, 186-638, 186-639, 186-640, 186-641, 186-642, 186-643, 186-644, 186-645, 186-646, 186-647, 186-648, 186-649, 186-650, 186-651, 186-652, 186-653, 186-654, 186-655, 186-656, 186-657, 186-658, 186-659, 186-660, 186-661, 186-662, 186-663, 186-664, 186-665, 186-666, 186-667, 186-668, 186-669, 186-670, 186-671, 186-672, 186-673, 186-674, 186-675, 186-676, 186-677, 186-678, 186-679, 186-680, 186-681, 186-682, 186-683, 186-684, 186-685, 186-686, 186-687, 186-688, 186-689, 186-690, 186-691, 186-692, 186-693, 186-694, 186-695, 186-696, 186-697, 186-698, 186-699, 186-700, 186-701, 186-702, 186-703, 186-704, 186-705, 186-706, 186-707, 186-708, 186-709, 186-710, 186-711, 186-712, 186-713, 186-714, 186-715, 186-716, 186-717, 186-718, 186-719, 186-720, 186-721, 186-722, 186-723, 186-724, 186-725, 186-726, 186-727, 186-728, 186-729, 18																	

구	역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역	지 적 (㎡)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구	역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역	지 적 (㎡)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회 종류 및 내용	비고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회 종류 및 내용	비고
201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3-12	철	49	26		국(국토교통부)					226	울산시	북구	진장동	593-2	철	155	126		울산광역시						
202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1-6	철	1,570	1,561		국(국토교통부)					227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5-2	구	1,538	1,53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03	울산시	북구	진장동	592-4	구	13	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28	울산시	북구	효문동	964-44	구	199	21		국(농림축산식품부)						
204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3-4	담	211	120		국(국토교통부)					229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5-5	구	33	3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05	울산시	북구	진장동	593	철	26,877	837		국(국토교통부)					230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6-2	담	10	10		울산광역시						
206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3-13	철	56	56		국(국토교통부)					231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6-4	담	75	29		울산광역시						
207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4-12	담	64	24		국(국토교통부)					232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5-1	담	704	404		울산광역시						
208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3-6	구	7	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33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5-14	담	96	86		울산광역시						
209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4-7	전	576	61		국(국토교통부)					234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5-6	구	38	38		울산광역시						
210	울산시	북구	효문동	964-41	구	564	564		국(농림축산식품부)					235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5-12	담	1,078	953		울산광역시						
211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1-12	구	116	116	전라남도 나주시 그란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36	울산시	북구	효문동	813-15	장	1,739	3		울산광역시 북구 애곡산업4길 4(매곡동)	조**공주식회사					
212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4-8	전	120	78		국(국토교통부)					237	울산시	북구	효문동	813-16	장	1,734	16		울산광역시 북구 범평로 6** 10*호(진장동)	광**별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천로 642(석천동)(호계광물센터)	주식회사경남은행	근저당권자		
213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5-15	도	12	12		국(건설부)					238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3-1	담	207	167		울산광역시						
214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4-10	구	4	4	전라남도 나주시 그란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39	울산시	북구	효문동	821	도	1,410	211		국(건설부)						
215	울산시	북구	효문동	964-42	구	145	145		국(농림축산식품부)					240	울산시	북구	효문동	822	도	13,439	1,824		국(건설부)						
216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6-6	담	1,549	39		울산광역시					241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5-13	담	89	64		울산광역시						
217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4-9	구	20	20	전라남도 나주시 그란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42	울산시	북구	효문동	964	구	543	340		국(농림축산식품부)						
218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4-4	구	3	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43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9	전	4,245	18		울산광역시						
219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1-7	구	46	4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44	울산시	북구	효문동	972	도	105	3		국(건설부)						
220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4-2	구	59	5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45	울산시	북구	효문동	823	도	805	148		국(건설부)						
221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6-5	담	2,542	383		울산광역시					246	울산시	북구	효문동	815-1	장	2,268	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로 2***(효문동)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광동로 30(문현동, 부산은행본점)(울산중앙지점)	주식회사부산은행	근저당권자			
222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6-4	구	17	1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47	울산시	북구	효문동	815-2	장	2,251	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로 2***(효문동)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광동로 30(문현동, 부산은행본점)(울산중앙지점)	주식회사부산은행	근저당권자			
223	울산시	북구	진장동	593-5	철	11	11		국(국토교통부)					248	울산시	북구	효문동	824	도	7,367	1,018		국(건설부)						
224	울산시	북구	효문동	886-2	구	202	20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49	울산시	북구	효문동	820	전	24,825	11,201		국(환경부)						
225	울산시	북구	효문동	905-7	도	89	89		국(건설부)					250	울산시	북구	효문동	740-2	구	209	106		국(기획재정부)						

구 역	토 지 소 제 지			지 번	지 목	지 적 (w)	면적면적 (w)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연				구 역	토 지 소 제 지			지 번	지 목	지 적 (w)	면적면적 (w)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연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비 종류 및 내용	비고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비 종류 및 내용	비고
251	울산시	북구	효문동	717-2	구	296	25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52	울산시	북구	효문동	714-1	구	1,547	64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53	울산시	북구	효문동	429-2	구	2,695	89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54	울산시	북구	효문동	750-4	구	3	3		국(기획재 정부)																		
255	울산시	북구	효문동	963-2	현	6,393	5,385		국(환경부)																		
256	울산시	북구	효문동	750-3	구	119	51		국(기획재 정부)																		
257	울산시	북구	효문동	750-25	담	85	41		울산광역시																		
258	울산시	북구	효문동	747-5	담	243	1		울산광역시																		
259	울산시	북구	효문동	711-1	구	1,699	4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60	울산시	북구	효문동	719-4	구	1,571	1,41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61	울산시	북구	효문동	430-23	구	766	76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62	울산시	북구	효문동	430-2	구	86	86		국(기획재 정부)																		
263	울산시	북구	효문동	612-1	구	893	87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64	울산시	북구	효문동	608-2	구	215	115	효문동 41*	강*순			토지대장과 수 유권 상이															
265	울산시	북구	효문동	612-2	구	142	142		국(기획재 정부)																		
266	울산시	북구	효문동	613-1	구	201	20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67	울산시	북구	효문동	609-2	구	274	274		국(기획재 정부)																		
268	울산시	북구	효문동	611-2	구	314	253		국(기획재 정부)																		
269	울산시	북구	효문동	611-1	구	1,489	1,13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70	울산시	북구	효문동	431-3	구	2,586	26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71	울산시	북구	효문동	610-2	구	96	90		국(기획재 정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0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현행 훈령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약 관리체계를 제도화 하고 공약 이행의 책임성 확보
- 현행 지침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공약 관리체계 (안 제3조)
- 공약사항의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안 제4조 ~ 제5조)
- 공약 실천계획 변경 절차 (안 제6조)
- 공약 이행 점검 (안 제7조)
- 공약 이행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 제10조)
- 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 등 (안 제11조 ~ 제13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3층 기획예산실

2) 전화번호 : 052)241-7152,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dhksh1323@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공약사업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공약사항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3. 현황 분석과 전망
4. 국가 및 울산광역시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정된 실천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한다.

④ 실천계획은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거쳐 실천계획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종합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또는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다만, 공약이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구민을 대상으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은 지역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개선의견 제시

제10조(회의)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및 환류) ① 공약사항 이행평가는 당초 공약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서면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단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2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과 실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이행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
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
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 행정7급 김규리 (241-715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05호

202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년간)

2. 지원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범위

- 우리 구 사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 사업비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권고

4. 지원절차

- 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부서 1차 검토 ⇒ 2차 검토(기획예산실)
⇒ 위원회 심의·결정 ⇒ 의회 의결 ⇒ 결과 통보

5.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7. 30.(목) ~ 8. 18.(화) 18:00한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접 수 처 : 울산 북구청 사업주관부서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지원 신청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신규 보조사업자)
- 접수방법 : 사업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우편 접수분은 2026. 8. 18.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주 소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과

6. 보조금신청 결과 통보

- 시 기 : 2026. 12월(2027년도 예산 의회 의결 후)
- 방 법 : 개별통보(신청서 접수서 → 보조사업자)

7. 보조금 교부

- 지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소관부서에서 교부 및 관리(소관부서 → 보조사업자)
 - ※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전용 통장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 있을 시 사전 예치 필수)
보조금 전용결제카드 사본(전용카드 미사용 시 향후 사업신청 패널티 적용)

8.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운용평가

- 사업완료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 출 처 : 보조사업자 → 사업주관부서
 - ※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하고, 같은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교부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 ※ 해당 수수료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부담
- 운용평가
 - 평가시기 : 2027년 7월 이내
 - 평가방법 : 사업부서 자체평가 후 예산부서 확인·점검
 - 평가기준 : 3개 분야 평가(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 평가반영 :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9.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시 반려됨
-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정산평가를 통하여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정집행은 환수처리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 외에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구 사업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241-7000, 기획예산실 241-7114)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① 지방보조금 신청 서식

- 1-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보조사업자)
 - 1-1-1. 지방보조사업자 소개서
 - 1-1-2.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신규 보조사업자)
 - 1-1-3.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1-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검토의견서(비공모사업-사업부서)
- 1-3.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검토의견서(공모사업-사업부서)
- 1-4.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검토의견서(공모사업-사업부서)

②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서식

- 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보조사업자)
 - 2-1-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
 - 2-1-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 2-1-3. 청렴서약서
 - 2-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2-1-5. 단체 회원 명단
 - 2-1-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보조사업자)
- 2-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사업부서)
- 2-3.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사업부서)

③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 3-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 3-2.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보조사업자)
- 3-3. 지방보조금 정산검사서(사업부서)
- 3-4. 중요재산 관리대장(보조사업자)
- 3-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사업부서)

【참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사항)

① 지방보조금 신청 서류

1-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보조사업자)

1-1-1. 지방보조사업자 소개서

1-1-2. 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신규 보조사업자)

1-1-3.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검토의견서(비공모사업-사업부서)

1-3.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검토의견서(공모사업-사업부서)

1-4.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검토의견서(공모사업-사업부서)

[붙임1-1](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직원수 (회원수)	○ 상근직원 명,		○ 회원수 명	
	대표자	성명 : 휴대폰 :			
	실무자	직위		성명	
휴대폰			e-mail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 . .	사업(행사) 장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체부담액	천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사업자 소개서(사업활동실적 포함, 회원명부 첨부)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산출내역서 포함) 1부
3.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1부. (신규 신청 단체에 한함)

※ 유의사항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로 작성·신청하여야 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울산광역시 북구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대상자 선정심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 시 ~ 보조금집행 완료 시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1-1-1] (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지방보조사업자 소개서

◎ 기본현황

보조사업자명				
주 소 및 연 락 처	주소 (우편번호 :)			
	○ 전 화:		○ E-Mail:	
고유번호 등	○ 등록기관		○ 등록일	
	○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보조사업자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보조사업자 연혁	○ '00.00.00. : 0000창립(설립) ○ '00.00.00. : 000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조직현황	대표자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명
	회원수	명		
2026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 정부보조 : %, 사업수익 : %, 기타 : %			

◎ 사업활동 실적(2025. 1. 1 ~ 2026. 현재)

단 위 사 업 명	활 동 내 용	비 고
1)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소요금액 : ○ 사업내용 :	
2)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내용 :	
3)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내용 :	
4)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내용 :	

※ 실적을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반드시 작성하고, 필요시 각종 자료, 사진 등 첨부(필수)
단체 고유사업 및 북구 주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각종 행사에 참여한 실적 포함 작성

◎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역

2025년도			2026년도		
사 업 명	금 액 (천원)	지원부서	사 업 명	금 액 (천원)	지원부서

[붙임1-1-2](신규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 신규 신청 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page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 업 명	활 동 실 적	비 고
	1. 사업기간 : 2. 장 소 : 3. 참여인원 : 4. 활동내용 : 5. 사업효과 :	

[붙임1-1-3] 사업계획서(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행사)개요

- 기간 : 20 . . . ~ 20
- 장소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추진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
 -

4. 사업 성과목표

< 성과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분	'25	'26	'27	
	목표				(예시) ◦ 이용인원/운영계획*100 ◦ 참여인원(명)/계획인원(명) ◦ 개최횟수/개최계획 등
	실적				

5.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 . . .	◦ ◦ ◦	
20 . . .	◦ ◦ ◦	

6.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출기초	사용 방법
	보조 비목	보조 세목	계	지방 보조금	자부담		
총 계							
단위사업1	소 계		2,240	1,880	36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1,600	1,600	-	강의재료비 구입 - 800,000원 × 2박스 = 1,600,000원	계좌이체
	업무 추진비	기관운 영업무 추진비	360	-	360	OO회의 간담회 식대 - 9,000원 × 40명 = 360,000원	전용카드
	일반 운영비	운영 수당	280	280	-	강사비(1급, 2시간) - 180,000원+100,000원 (초과1시간)=280,000원	계좌이체
단위사업2	소 계						

<작성요령(예시)>

- ① 예산항목: **보통e 시스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비목(편성목) · 세목(통계목)으로 구분 작성**
 ②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부,회 등) = ○○○천 원
 -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의사항
 - 기부금, 시상금·품, 경조사비,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등 예산 편성 지양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사업비 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산출내역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정확히 작성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시 기준이 됨)

7. 보조금 외 경비부담 내역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담자 성명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고
계	○○명			
자 부 담 (회비 등)	○ ○ ○ 외 00명	₩100,000	회비	(예시)
기 타 (기부금 등)				
	⋮			

8. 재산현황

(단위 : 천원)

자 산 액	부 채 액	비 고

9.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10. 수입금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사 업 명	수 입 금 (단위:천원)	수입 내역	비 고

※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붙임1-2]비공모사업 검토의견서(사업부서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1

지방보조사업명 기재

【 부서명: , 담당자: 0 0 0 00000 】

□ 검토사항

신청내용	사업자명	(대표자 :)		
	사업개요			
	사업총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지원근거 (근거법령)			
신청단체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격 성	• 사업수행의 전문성 ☐ 높음 ☐ 보통 ☐ 낮음 • 공익활동 단체 여부 ☐ 주민의식 ☐ 자원봉사 ☐ 문화 ☐ 인권 ☐ 환경 ☐ 국제협력 ☐ 주민참여 ☐ 기타 • 공익사업 활동 기간 ☐ 1년이상 (년) ☐ 1년미만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항 등 소관사무 수행의 관련성 여부의 검토 ☐ 매우 적절 ☐ 대체로 적절 ☐ 부적절 (※지방재정법 제17조 근거) • 신청사업의 공익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실 현 가 능 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지역사회 기여/수혜	•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정도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매우넓음 ☐ 넓음 ☐ 무난 ☐ 미흡		
	사 업 의 필 요 성	•		
	전 년 도 사업실적	•		
	기대효과	•		
		•		
신청예산 검토내용	자체부담 및 이중지원 여 부	•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 매우적절 ☐ 적절 ☐ 무난 ☐ 미흡 (※단순 금액비율만 고려하지 말고, 의존성, 불가피성을 종합판단) • 타기관·단체, 유사보조금, 기금등의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 - 이중지원 내역 :		
	보 조 금 예산편성 적 정 성	• 추진사업에 비하여 예산 과다 계상 ☐ 적절 ☐ 부적절 (천원) • 사업효과에 비하여 투입비용 과다 ☐ 적절 ☐ 부적절 (천원) • 소모성경비,운영비,자본적경비 포함 ☐ 적절 ☐ 부적절 (천원) - 부적절 편성내역 :		
	과거 예산 지원 실적	2024년	2025년	2026년
		천원	천원	천원

☐ 신청 및 조정 검토내역 ****작성서식 금지****

보조비목, 보조세목은 p.52~65 참고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산출 기초	신 청 액			1차조정 (소관부서)		2차조정 (기획예산실)		위원회 심 의		2026년 지원액
보조 비목	보조 세목		계	보조금	자부담	의견	금액	의견	금액	의견	금액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강의재료비 50천원×10개 =500,000	500	400	100	적정	400					

☐ 부서 검토의견

— 보조금지원 검토액: 천원(신청액의 %)

—

—

—

[붙임1-3] **공모사업 검토의견서(사업부서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1

지방보조사업명 기재

【 부서명: , 담당자: 0 0 0 00000 】

☐ 검토사항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지원대상 (자격요건)			
	사업내용			
	사업비 (예산요구액)	천원		
	지원조건	※ 자부담을 등		
	지원근거 (근거법령)			
	기대효과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지 원 액	천원	천원	천원
	실집행액	천원	천원	천원

☐ 신청 및 조정 검토내역

(단위:천원)

항 목	신 청 액			1차조정 (소관부서)		2차조정 (기획예산실)		위원회 심 의		2026년 지원액
	계	보조금	자부담	의견	금액	의견	금액	의견	금액	

☐ 종합의견

—
—
—

[붙임1-4](공모)보조사업자 선정 검토의견서(사업부서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1

지방보조사업명 기재

【 부서명: , 담당자: 0 0 0 00000 】

1. 공모현황

공고개요	공 고 일 : 20 . . . (일간) 공고번호 : - 공고방법 :
참 여 자 자격요건	
공모사업 개 요	추진기간: 장 소: 대상인원: 사업비(예산액): 주요내용 . . .
접수현황	00개 보조사업자 신청 → 00개 보조사업자 선정

2. 신청 보조사업자 현황

신청 보조 사업 자	사업자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회원수		
신청 사업 개요	사업기간				지원근거 (근거법령)		
	재원구분	총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	○ ○ ○ ○					
	‘25년 사업추진	계 획			실 적		

사업 성과	실적	○ ○		○ ○	
	사업성과	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평가	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			
연도 별 지원 현황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지 원 액	천원 (구비: 자부담:)	천원 (구비: 자부담:)	천원 (구비: 자부담:)	
	실집행액	천원 (구비: 자부담:)	천원 (구비: 자부담:)	천원 (구비: 자부담:)	

3. 부서장 검토의견

※ 보조사업자 (미)선정 사유, 우선순위 선정사유, 예산구성의 적정성 여부, 지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포함

○ 00보조사업자

—
—

○ 00보조사업자

—
—

○ 종합의견

—
—
—

②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 및 교부신청 서식

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1-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

2-1-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2-1-3. 청렴서약서

2-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1-5. 단체 회원 명단

2-1-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보조사업자)

2-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사업부서)

2-3.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붙임2-1](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지방보조금 선정 사업명
2. 신 청 자: 보조금선정 보조사업자명 및 대표자
3. 사업기간: 20 . . . ~ 20 . . .
4. 교부신청액: 금 원(₩)
5. 계좌번호: ○○ 은행 ○○-○○-○○○-○
계좌명의(가입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보조금선정 보조사업자명 및 대표자(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실행계획(서) 1부.
2.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先예치 필수)
3.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본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7. 단체 회원 명단 1부. 끝.

[붙임2-1-1](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

보 조 사 업 자 현 황	사업자명			대 표 자		
	소 재 지			실 무 담당자		
	생년월일	※법인번호가 없을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		연락처		
	등록일자 및 번 호	. . . (번호)		등록기관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소관부서		
	사업기간		사업장소		참 여 (수혜)인원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20 년 월 일

신청보조사업자명:

직 인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2-1-2](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 page 수는 제한없음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행사)개요

- 기 간 : 20 . . . ~ 20 . . .
- 장 소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추진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

4. 사업 성과목표

< 성과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분	'25	'26	'27	
	목표				(예시) ◦ 이용인원/운영계획*100 ◦ 참여인원(명)/계획인원(명) ◦ 개최횟수/개최계획 등
	실적				

5.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 . . .	◦ ◦ ◦	
20 . . .	◦ ◦ ◦	

6.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출기초	사용 방법
	보조 비목	보조 세목	계	지방 보조금	자부담		
총 계							
단위사업1	소 계		2,240	1,880	36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1,600	1,600	-	강의재료비 구입 - 800,000원 × 2박스 = 1,600,000원	계좌이체
	업무 추진비	기관운 영업무 추진비	360	-	360	OO회의 간담회 식대 - 9,000원 × 40명 = 360,000원	전용카드
	일반 운영비	운영 수당	280	280	-	강사비(1급, 2시간) - 180,000원+100,000원 (초과1시간)=280,000원	계좌이체
단위사업2	소 계						

<작성요령(예시)>

- ① 예산항목: **보통e 시스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비목(편성목) · 세목(통계목)으로 구분 작성**
- ②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
- ③ 산출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부,회 등) = ○○○천 원
 -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유의사항
 - 기부금, 시상금·품, 경조사비,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등 예산 편성 지양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사업비 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산출내역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정확히 작성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시 기준이 됨)

7. 보조금 외 경비부담 내역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담자 성명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고
계	○○명			
자 부 담 (회비 등)	○ ○ ○ 외 00명	₩100,000	회비	(예시)
기 타 (기부금 등)				
	⋮			

8. 재산현황

(단위 : 천원)

자 산 액	부 채 액	비 고

9.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10. 수입금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사 업 명	수 입 금 (단위:천원)	수입 내역	비 고

※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붙임2-1-3](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 보조사업 청렴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2-1-4]

지방보조사업자 단체 회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방보조사업자의 단체 회원 관리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방보조사업자의 단체회원관리 및 보조금 관리	보조사업 종료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사업자 단체회원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조사업 종료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2-1-5]

000 단체 회원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2-1-6](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보조사업명	총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2-2](사업부서에서 작성)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보조사업자 O, 자치보조사업자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연도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교부세(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5, 2016, 2017,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연도별	보조사업자명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 2018, 2019,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사업연도별	계 획	관 리	성 과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보조사업자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붙임2-3](앞면)(사업부서에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예산과목: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 교부결정액: 금 원(₩)

☐ 교부내역 (단위:천원)

교부 결정액 (A)	교 부 액			재 원 구 분			비고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잔액 A-(B+C)	계	보조금	자부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붙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인)

(뒷면)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교부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법령 및 예산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계산에 따라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하여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방보조금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정리 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 시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나.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우선사용 원칙으로 자부담 미사용 시 해당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납,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 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북구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농협)'를 발급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5.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 장부를 갖추어 두어 관리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구청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매매·양도·담보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6.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단체회원 공람확인 증빙서류 등 첨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7. 보조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보조금 사용 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의 벌칙규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기타

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3-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3-2.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보조사업자)

3-3. 지방보조금 정산검사서(사업부서)

3-4. 중요재산 관리대장(보조사업자)

3-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사업부서)

[붙임3-1](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 20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
추진 실적보고서

사업명 기재

보조사업자명 직인

I. 사업개요(요약)

사업자명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II.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 유
○월○월		○월○월		당초 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나는 경우 사유 기재

〈 작성요령 〉 (작성 후 삭제)

○ 가급적 추진실적을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III.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작성 후 삭제)

○ 보조금 지원 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 작성분량 : 3쪽 이내

IV. 사업성과달성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 년 사업성과 달성도 (%)
	구분	'25	'26	'27	
	목표				
	실적				

IV. 성과물 활동 사진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

사업명		일 시	
장 소		장 소	

V.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수범사례)

1. 제도개선사항

〈 작성요령 〉

각종 업무처리과정(기술적인 문제 포함)에서 법규 미비 또는 비현실성,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처리능력 향상,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

2. 수범사례

〈 작성요령 〉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성을 도모한 사례, 탁월한 업무능력 발휘를 통한 업무개선사항, 예산절감 사례, 우수사례 등

3. 애로 및 건의사항

〈 작성요령 〉

애로, 건의사항을 건명, 현황 및 문제점, 대책(건의) 순으로 건당 A4용지 1매로 작성

[붙임3-2](보조사업자 작성)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사업기간:

◇ 장 소:

◇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 자부담)

보조사업자명: (직인)

(작성자: ☎)

○○○사업 정산보고서

I. 정산 총괄표

(단위: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현금 + 계좌이체	카드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 : 원(%)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II.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사업계획		지출액	잔액	집행 방법	비고
	비목	금액				
	계					
	홍보비	150,000	100,000	50,000	계좌	50,000원
					카드	50,000원
	인건비	400,000	400,000	-	계좌	계획변경
	물품구입비	300,000	250,000	50,000	카드	계획변경

2.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결의서 번호	비목	적요 및 산출내역	지출액	집행 방법	지출일자 (인출일자)
		계	※건별입력			
	1	홍보비	현수막 구입(50,000원×1개)	100,000	카드	00월 00일
	2	인건비	강사수당(100,000원×2명)	200,000	계좌	00월 00일
	3	인건비	단순인건비(100,000원×2명)	200,000	계좌	00월 00일
	4	물품구입비	사무용품 구입 (250,000원×1식)	250,000	카드	00월 00일

3.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사 업 계 획		지출액	잔액	집행 방법	비고
	비목	금액				
	계					
	홍보비	150,000	100,000	50,000	카드	
	인건비	400,000	400,000	-	계좌	계획변경
	물품구입비	300,000	250,000	50,000	카드	계획변경

4.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결의서 번호	비목	적요 및 산출내역	지출액	집행 방법	지출일자 (인출일자)
		계	※건별입력			
	5	홍보비	현수막 구입(50,000원×1개)	100,000	카드	00월 00일
	6	인건비	강사수당(100,000원×2명)	200,000	계좌	00월 00일
	7	인건비	단순인건비(100,000원×2명)	200,000	계좌	00월 00일
	8	물품구입비	사무용품 구입 (250,000원×1식)	250,000	카드	00월 00일

※ 작성시 참고사항 (작성 후 삭제)

1. 집행방법은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로 구분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A4용지에 부착·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통장인출일자를 기재
- 1개 보조사업자에서 2건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홍보비	150,000	100,000	50,000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기재

IV.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인건비	500,000	400,000	
	물품구입비	200,000	300,000	

※ 복구청 승인여부, 자체내부방침 설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별첨)

V. 정산보고서 회원 공람 증빙자료

※ 정산시 지참물

- ① 정산보고서 1부
- ② 내부품의서(사본)_원본대조필 날인 1부
- ③ 지출결의서(사본)_원본대조필 날인 1부
- ④ 영수증(사본)_원본대조필 날인 1부
- ⑤ 보조금 통장(사본)_원본대조필 날인 1부
- ⑥ 원천징수명세서(사본)_원본대조필 날인 1부
- ⑦ 정산보고서 회원 공람 증빙자료 1부
- ⑧ 기타 보조사업자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중요재산 관리대장 등)

[서식3-3]지방보조금 정산검사서(사업부서)

보 조 금 정 산 검 사 서

결	주무관		
등록번호	20 년 월 일 (요일)	재	

- 사 업 명 :
- 사업일시 :
- 검사내역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보조사업자		
보조금		
사업비 정산의 적정여부		
사업계획과 집행의 적정여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여부		
법령 또는 보조조건 위반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19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검사를 하였음을 확인함

20 . .

정산검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보조금 정산 검사 체크리스트

▶ 보조사업명 : (부서명 :)

점 검 내 용	○	×	결과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조건 명시 및 적정 여부			
- 청렴사용 서약서 징구 여부			
-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 입금 여부			
- 1건의 보조사업에 1개 통장인지 여부 (1개 사업 1개 통장 원칙, 자부담과 보조금 통장 분리 가능)			
- 자부담 입금 확인 후 보조금 교부 했는지 여부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한 함)			
- 보조금 분할 교부 여부 (원칙은 2차례 이상 나눠서 교부, 최종 교부 전 기존 교부금이 정상 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 보조금 교분 전 집행에 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교부결정 통지 전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집행 불가, 단 사전 승인 시 가능)			
○ 보조금 집행			
- 지출결의서 작성 후 대표자 결재 여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여부(복수 카드 발급 가능)			
- 계좌 이체 시 세금계산서 첨부 여부			
- 자부담 집행 적정 여부(자부담도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			
- 교육사업의 경우 강사 수당 집행(소득세 공제 여부, 수당 책정 적정 여부) 적정 여부			
- 회계연도 내 집행 여부(불가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일반적인 회계원칙 준수 여부			
- 사업비 변경 사전 승인 여부			
- 수행상황(30억 이상 사업, 공모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점검 여부			
○ 보조금 정산			
- 2개월 이내 정산(실적)보고 여부			
-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 반납 적정 여부			
○ 보조금 정산검사			
- 정산검사 적기 여부 * 사업 완료 후, 사업연도 종료 정산검사 실시			
-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지 않음에도 적정으로 처리한 경우, 정산 검사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음 * 보조금은 담당공무원의 정산검사 후 확정됨			

[서식3-4]중요재산 관리대장(보조사업자)

중요재산 관리대장

[illegible]

[서식3-5]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사업부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목적			

2027년도 주요사업 성과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금 집행액 (자부담제외)
	기간 : 3. 21. ~ 3. 27. 장소 : 북구청 내용 : 날짜, 장소, 참여대상, 참여인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2,600천원

사업추진실적 평가점수 (항목별 성과평가표 참조)

계(100점)	사업계획(20점)	사업관리(40점)	사업성과(40점)	등급	비고
72	12	30	30	보통	

* 등급결정 : 매우우수(91점 이상), 우수(90점~81점), 보통(80점~61점), 미흡(60점~51점), 매우미흡(50점이하)

파급효과

- (작성)
-

사업비 현황 (금액 소수점 첫째 자리 까지 작성 가능, 670원→0.7, 1,540원→1.6)

총괄

(단위 : 천원)

최종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3,000	2,700	300	2,800	2,600	200	200	100	100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20 . . . 이자반납), 정산보고서 첨부

사업비 집행방법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A=B+C)	집행액(B)			기타(C) (반환,잔액 등)
		카드사용액	계좌입금	현금지급	
계	3,000	1,100	1,700	-	
보조금	2,700	900	1,700	-	
자부담	300	200	-	-	

성과평가표 세부설명서

구분	착안사항	배점	점수										
사업 계획 (20점)	1-1 타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 유무 <table><tr><td>답변</td><td>독창적인 사업</td><td>유사한 사업이 있지만 수혜대상이 다름</td><td>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며 수혜대상이 유사함</td></tr><tr><td>점수</td><td>5</td><td>3</td><td>1</td></tr></table>	답변	독창적인 사업	유사한 사업이 있지만 수혜대상이 다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며 수혜대상이 유사함	점수	5	3	1	5	5		
	답변	독창적인 사업	유사한 사업이 있지만 수혜대상이 다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며 수혜대상이 유사함									
	점수	5	3	1									
	1-2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6										
	① 수립된 사업계획이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가? <table><tr><td>답변</td><td>적정</td><td>보통</td><td>미흡</td></tr><tr><td>점수</td><td>5</td><td>3</td><td>0</td></tr></table>	답변	적정	보통	미흡	점수	5	3	0	5	3		
	답변	적정	보통	미흡									
	점수	5	3	0									
② 사업비 지출계획이 사업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table><tr><td>답변</td><td>적정</td><td>보통</td><td>미흡</td></tr><tr><td>점수</td><td>5</td><td>3</td><td>0</td></tr></table>	답변	적정	보통	미흡	점수	5	3	0	5	3			
답변	적정	보통	미흡										
점수	5	3	0										
1-3 보조사업의 보조금 규모 및 수혜범위가 적절한가?	5	2											
① 보조금 금액의 규모 및 수혜자 범위 <table><tr><td>답변</td><td>적정</td><td>보통</td><td>미흡</td></tr><tr><td>점수</td><td>2</td><td>1</td><td>0</td></tr></table>	답변	적정	보통	미흡	점수	2	1	0	2	2			
답변	적정	보통	미흡										
점수	2	1	0										
② 보조사업자 자부담 포함 여부 <table><tr><td>답변</td><td>20%이상</td><td>10%이상</td><td>5%이상</td><td>없음</td></tr><tr><td>점수</td><td>3</td><td>2</td><td>1</td><td>0</td></tr></table>	답변	20%이상	10%이상	5%이상	없음	점수	3	2	1	0	3	0	
답변	20%이상	10%이상	5%이상	없음									
점수	3	2	1	0									
사업 관리 (40점)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10										
	① 계좌지급만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자부담 포함) <table><tr><td>답변</td><td>전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td><td>보조금 전용카드 80% 이상 사용</td><td>보조금 전용카드 80% 미만 사용</td><td>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td></tr><tr><td>점수</td><td>5</td><td>3</td><td>1</td><td>0</td></tr></table>	답변	전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 80% 이상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 80% 미만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점수	5	3	1	0	5	5
	답변	전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 80% 이상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 80% 미만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점수	5	3	1	0								
	② 보조사업 정산결과 회계관리 적정여부 <table><tr><td>답변</td><td>적정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td><td>보완정정 (첨부서류 누락 등)</td><td>보완불가 (품의, 결의 누락 등)</td></tr><tr><td>점수</td><td>3</td><td>2</td><td>0</td></tr></table>	답변	적정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	보완정정 (첨부서류 누락 등)	보완불가 (품의, 결의 누락 등)	점수	3	2	0	3	3		
	답변	적정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	보완정정 (첨부서류 누락 등)	보완불가 (품의, 결의 누락 등)									
점수	3	2	0										
③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였는가?(정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table><tr><td>답변</td><td>2개월 내</td><td>1개월 지연</td><td>2개월 이상 지연</td></tr><tr><td>점수</td><td>2</td><td>1</td><td>0</td></tr></table>	답변	2개월 내	1개월 지연	2개월 이상 지연	점수	2	1	0	2	2			
답변	2개월 내	1개월 지연	2개월 이상 지연										
점수	2	1	0										
④ 보조금 통장관리 부적정 □ 사업별 개별 통장사용 미준수 □ 기존통장 사용 시 보조금 수령 전 잔고 0원처리 미준수 □ 보조금 수령 전 자부담 예치 미준수 □ 수익금 관리통장 별도 개설 미준수 ▣ 1개당 -1점 ▣ 미준수 내용 :	감점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15											

	① 당초계획 대비 일치여부				
	답변	당초계획과 일치	사업(승인)변경	사업임의변경	
	점수	5	3	0	5
	② 예산집행률(자부담 포함)				
	답변	90%이상	70%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0	8	6	4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예시) 예산절감, 절차 간소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 무상 활용 등				
	답변	2건 이상	1건	없음	
	점수	5	3	0	3
	□ 절감건수/내용 : 1건 / 온라인 설문조사로 설문조사 인쇄비 절감				
	2-4 적절한 부정수급 대책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① 집행단계별 적정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되었는가? ⇒ 예시) 교부단계 : 청렴서약서 징구, 교육 등등 / 집행단계 : 현장 점검, 모니터링 등등				
	답변	3건 이상	2건	1건	없음
	점수	5	3	1	0
	□ 건수/내용 : 1건 / 청렴서약서 징구				
	② 정산보고서 및 회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가?				
	답변	실시	미실시		
	점수	5	0		5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감점
	① 소관부서 승인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시 □ 보조금액의 1%당 -1점				감점
	② 자부담 집행비율 미준수 (자부담 집행액/계획된 자부담 예산액*100)				
	답변	70%미만	80%미만	90%미만	
	점수	-5	-3	-1	-
	③ 예산 낭비 사항				
	답변	보조금 대비 예산낭비액 10% 이상		보조금 대비 예산낭비액 10% 미만	
	점수	-10		-5	
사업 성과 (40점)	3-1 계획된 성과 달성 여부 ⇒ ① 계획한 사업 내용이 일정에 맞게 추진되었는가? ② 사업 수행을 통해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③ 사업목표 달성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20
	답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20	15	10	5
	3-2 계속지원 필요성 ⇒ ①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②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와 지지가 높은가? ③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혜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20
	답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20	15	10	5
	사업계획(20점)		사업관리(40점)		사업성과(40점)
	13		34		35
					총계
					82
				평가등급	
				우수	

* 등급결정 : 매우우수(91점 이상), 우수(90점~81점), 보통(80점~71점), 미흡(70점~61점), 매우미흡(60점이하)

유지필요성 평가표 세부설명서

구분	착안사항	배점	점수										
사업 계획 (25점)	1-1 타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 유무 <table><tr><td>답변</td><td>독창적인 사업</td><td>유사한 사업이 있지만 수혜대상이 다름</td><td>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며 수혜대상이 유사함</td></tr><tr><td>점수</td><td>5</td><td>3</td><td>1</td></tr></table>	답변	독창적인 사업	유사한 사업이 있지만 수혜대상이 다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며 수혜대상이 유사함	점수	5	3	1	5	5		
	답변	독창적인 사업	유사한 사업이 있지만 수혜대상이 다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며 수혜대상이 유사함									
	점수	5	3	1									
	1-2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6										
	① 수립된 사업계획이 사업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table><tr><td>답변</td><td>적정</td><td>보통</td><td>미흡</td></tr><tr><td>점수</td><td>5</td><td>3</td><td>0</td></tr></table>	답변	적정	보통	미흡	점수	5	3	0	5	3		
	답변	적정	보통	미흡									
	점수	5	3	0									
② 사업비 지출계획이 사업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table><tr><td>답변</td><td>적정</td><td>보통</td><td>미흡</td></tr><tr><td>점수</td><td>5</td><td>3</td><td>0</td></tr></table>	답변	적정	보통	미흡	점수	5	3	0	5	3			
답변	적정	보통	미흡										
점수	5	3	0										
1-3 보조사업의 보조금 규모 및 수혜범위가 적절한가?	10	3											
① 보조금 금액의 규모 및 수혜자 범위 <table><tr><td>답변</td><td>적정</td><td>보통</td><td>미흡</td></tr><tr><td>점수</td><td>5</td><td>3</td><td>0</td></tr></table>	답변	적정	보통	미흡	점수	5	3	0	5	3			
답변	적정	보통	미흡										
점수	5	3	0										
사업 관리 (25점)	① 보조사업자 자부담 포함 여부 <table><tr><td>답변</td><td>20%이상</td><td>10%이상</td><td>5%이상</td><td>없음</td></tr><tr><td>점수</td><td>5</td><td>3</td><td>1</td><td>0</td></tr></table>	답변	20%이상	10%이상	5%이상	없음	점수	5	3	1	0	5	0
	답변	20%이상	10%이상	5%이상	없음								
	점수	5	3	1	0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5										
	① 계좌지급만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자부담 포함) <table><tr><td>답변</td><td>전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td><td>보조금 전용카드 80% 이상 사용</td><td>보조금 전용카드 80% 미만 사용</td></tr><tr><td>점수</td><td>2</td><td>1</td><td>0</td></tr></table>	답변	전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 80% 이상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 80% 미만 사용	점수	2	1	0	2	2		
	답변	전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 80% 이상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 80% 미만 사용									
	점수	2	1	0									
② 보조사업 정산결과 회계관리 적정여부 <table><tr><td>답변</td><td>적정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td><td>보완정정 (첨부서류 누락 등)</td><td>보완불가 (품의, 결의 누락 등)</td></tr><tr><td>점수</td><td>2</td><td>1</td><td>0</td></tr></table>	답변	적정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	보완정정 (첨부서류 누락 등)	보완불가 (품의, 결의 누락 등)	점수	2	1	0	2	2			
답변	적정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	보완정정 (첨부서류 누락 등)	보완불가 (품의, 결의 누락 등)										
점수	2	1	0										
③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였는가?(정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table><tr><td>답변</td><td>준수(2개월 내)</td><td>미준수(지연)</td></tr><tr><td>점수</td><td>1</td><td>0</td></tr></table>	답변	준수(2개월 내)	미준수(지연)	점수	1	0	1	1					
답변	준수(2개월 내)	미준수(지연)											
점수	1	0											
④ 보조금 통장관리 부적정 □ 사업별 개별 통장사용 미준수 □ 기존통장 사용 시 보조금 수령 전 잔고 0원처리 미준수 □ 보조금 수령 전 자부담 예치 미준수 □ 수익금 관리통장 별도 개설 미준수 ▣ 1개당 -1점 ▣ 미준수 내용 :	감점	-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0	10											

사업 성과 (50점)	① 당초계획 대비 일치여부				5	5
	답변	당초계획과 일치	사업(승인)변경	사업임의변경		
	점수	5	3	0		
	② 예산집행률(자부담 포함)				5	5
	답변	90%이상	70%이상)	50% 이상		
	점수	5	3	1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예시) 예산절감, 절차 간소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 무상 활용 등				5	3
	답변	2건 이상	1건	없음		
	점수	5	3	0		
	□ 절감건수/내용 : 1건 / 온라인 설문조사로 설문조사 인쇄비 절감					
	2-4 적절한 부정수급 대책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	3
사업 성과 (50점)	① 집행단계별 적정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되었는가? ⇒ 예시) 교부단계 : 청렴서약서 징구, 교육 등등 / 집행단계 : 현장 점검, 모니터링 등등				3	1
	답변	3건 이상	2건	1건		
	점수	3	2	1		
	□ 건수/내용 : 1건 / 청렴서약서 징구					
	② 정산보고서 및 회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가?				2	2
	답변	실시	미실시			
	점수	2	0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감점	-
	① 소관부서 승인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시 □ 보조금액의 1%당 -1점				감점	-
	② 자부담 집행비율 미준수 (자부담 집행액/계획된 자부담 예산액*100)				감점	-
	답변	70%미만	80%미만	90%미만		
사업 성과 (50점)	점수	-5	-3	-1		
	③ 예산 낭비 사항				감점	-
	답변	보조금 대비 예산낭비액 10% 이상	보조금 대비 예산낭비액 10% 미만			
	점수	-10	-5			
	3-1 계획된 성과 달성 여부 ⇒ ① 계획한 사업 내용이 일정에 맞게 추진되었는가? ② 사업 수행을 통해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③ 사업목표 달성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30	23
	답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30	23	15	7	0
	3-2 계속지원 필요성 ⇒ ①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②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와 지지가 높은가? ③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혜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20	20
	답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5	10	5	0
사업계획(2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50점)		총계
14		21		43		평가등급
				78		보통

* 등급결정 : 매우우수(91점 이상), 우수(90점~81점), 보통(80점~71점), 미흡(70점~61점), 매우미흡(60점이하)

□ **사업비 현황** (금액 소수점 첫째 자리 까지 작성 가능, 670원→0.7, 1,540원→1.6)

① 총 괄

(단위 : 천원)

교 부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3,000	2,700	300	2,800	2,600	200	200	100	100

※ 당초 교부액과 최종 교부액이 다른 경우 : (당초) 천원 / (최종) 천원

② 사업비 집행방법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A=B+C)	집 행 액(B)			기타(C) (반환,잔액 등)
		카드사용액	계좌입금	현금지급	
계	3,000	1,100	1,700	-	
보조금	2,700	900	1,700	-	
자부담	300	200	-	-	

③ 사업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분	'24	'25	'26	
	목표				
	실적				(예시) ◦ 이용인원/운영계획*100 ◦ 참여인원(명)/계획인원(명) ◦ 개최횟수/개최계획 등

④ 집행잔액 발생사유(자부담 포함, 집행잔액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기재

⑤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 경 사 유	문서번호

⑥ 사업비 정산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사유 기재)

적 정	부적정
-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 일치 - 보조금 별도 통장관리 - 체크카드 사용을 100%	- 사전승인 없이 계획 변경 - 정산서류 미비 - 체크카드 사용을 저조(%)

【참고자료 1】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항목	비 목	기 준	지출 한도액(원)		비 고
인건비	강 사 료	◦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에 지급 불가 ◦ 단체의 임직원, 사업수행자, 참여(협력)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불가
	원 고 료	◦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 강의 시간당 6매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 기준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단순인건비	◦ 2027년 최저임금 적용			◦ 단체 소속회원에 지급불가
	회 의 비	◦ 심의의결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참가자에 지급하는 수당	2시간 이내	70,000	◦ 단체 내부 회의는 미해당
홍보비	홍 보 비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2시간 30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30,000	
			현수막(표준형)	개당 50,000	◦ 50만 원 이상 지출 시 타건적서 첨부
			현수막(대형)	개당 100,000	
			배너	개당 50,000	
			피켓	개당 30,000	
			어깨띠	개당 5,000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등	장당 500	
임차료	차 량 임 차 료	◦ 「지방계약법」을 적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음향장비, 차량, 행사장, 버스비 등) ※ 카드사용 원칙			◦ 영수증 원본, 견적서, 거래 명세서, 임차계약서, 임대장비 또는 장소 사진, 보험가입증명서
	장 소 임 대 료	◦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 체결			◦ 가급적 공공시설 활용
사 업 진행비	식 비	◦ 1인 / 1식당 9,000원			◦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식비로만 사용가능 ※ 회의·행사 후 내부 회원 식사 등에 지원 불가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시 식비 지출은 참석자 명단(성명, 소속 등)을 반드시 첨부
	다 과 비	◦ 1인당 3,000원			◦ 각종 행사,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구입비
	물 품구입비 (재료비 등)	◦ 시장시세 적용 (예. 행사용 소모품, 진행용품, 물품 구입 등)			◦ 50만 원 이상 지출 시 타건적서 첨부

【참고자료 1-2】 지방보조사업자 예산집행계획의 보조비목(편성목)·세목(통계목)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인건비 (101)	보수(101-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101-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1-03)	1.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 봉급, 수당, 정액급식,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수
일반 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 일반수용비 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아. 기 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 대행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송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 경비 9) 국선번호사 및 수입·고문번호사에 대한 번호료·수임료 및 보수 10) 속기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 적일 때에는 포함) 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12)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 역
		2. 피 복 비 가. 직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나.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1)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 및 회복비)에 계상 3. 급 량 비 가. 직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1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3)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4)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3)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위탁교육비 (201-31)	직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운영수당 (201-32)	1.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가능 2. 심사수당 1)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및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일·숙직비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4. 시험관리비 1)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 5. 강사수당 1)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6.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임차료 (201-33)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 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3.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4.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1)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5.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용역비	1. 일반용역비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201-34)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2. 관리용역비 가.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은 공공운영비(201-02,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고, 시설장비 일체에 대해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사무관리비(201-01, 관리용역비)로 편성
	공공운영비 (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통신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바. 의료원공공진료부담금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회의 부담금 2) 한국소방안전원 회비(소방기본법 제42조 등) 3) 전기안전협회비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5)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단,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는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편성) 6)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7) 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3) 등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자. 기 타 1)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공무원책임보험료, 기타보험료 3) 소방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4)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나. 공상치료비 등
	연료비 (201-41)	1.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 역
		※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시설유지비 (201-42)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2.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3.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4.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차량선박비 (201-43)	1.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2.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행사운영비 (201-03)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4)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여비 (202)	국내여비 (202-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 금지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31(위탁교육비)에 계상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국외업무여비 (202-03)	1. 국외 출장여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추진비 (20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1)	1. 업무협의를,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직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203-02)	※ 법령, 조례 또는 기관내부규정에 정원구간별 기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시책업무추진비 (203-03)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3-04)	1. 각 부서의 운영업무추진 제잡비 ※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편성하지 않음
직무수행경비 (204)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204-01)	1.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204-02)	1.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재료비 (206)	재료비(206-01)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약품 및 재료비 기타
연구 개발비 (207)	연구용역비 (207-01)	1.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전산개발비 (207-02)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
	시험연구비 (207-03)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 보전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2)	1.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3)	1.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장학금 및 학자금 (301-04)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법령상 기준액이 없는 경우, 과거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
	외빈초청여비 (301-09)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부(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 역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	1.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2.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행사실비지원금 (301-11)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예산편성 시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기타보상금 (301-14)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포상금 (303)	포상금(303-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퇴직(예정) 직원(가족포함)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연금부담 금등 (304)	퇴직금 등 부담금 (304-01)	1. 직원(무기계약직 등 포함)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
	보험료 부담금 (304-04)	1. 국민건강보험료의 기관(사업자) 부담금 2. 국민연금의 기관(사용자) 부담금 3. 고용보험부담금 및 사업재해보험료 등
배상금 등 (305)	배상금 (305-01)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민간이전 (307)	의료 및 회복비 (307-01)	1. 의료비 가.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 나. 수술관계약품 및 소모품비 다.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 대규모적이며 자본적인 기구, 집기는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라.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약포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2.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가. 피복의 구입비 나.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다.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라. 다량의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마.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바.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사. 치료비 및 시약대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1.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방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보험금 (307-06)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401-01)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공모설계비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3.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4.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다. 토지 정지공사비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바. 나~라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기업회계 등은 제외함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관급자재비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 5. 문화재 발굴경비 - 자치단체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6.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감리비(401-02)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나 문화재수리를 위한 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문화재수리감리 대가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시설부대비 (401-03)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 (장비임차료 포함)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3.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제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가.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나.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다.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 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 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함 가.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함 나.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다. 현장 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10.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시설부대비 편성 시 유의사항 -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민간 자본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2)	1.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방보조금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자산 취득비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6.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H/W구입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 상기 적용대상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예산을 시설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고, 일부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설계비와 감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도서 구입비 (405-02)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참고자료 1-3】 주요 보조비목·세목 집행기준 및 지급단가 기준(예시)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인건비 (101)	보수 등 (101-01~04)	1. 지방보조사업 지급기준 등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출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일반 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 일반수용비 -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음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 2. 피복비 - 직원에게 제공하는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함 - 행사참가자(체육회의 선수 및 응원단 등)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일괄 집행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등 적정단가에 따라 집행 3. 급량비 - 직원에게 급여하는 경비 ※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등을 집행.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 ※ 직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됨 - 직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9,000원 이내에서 집행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 ※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자에 대하여 지급 ※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식비를 따로 지급받은 자는 제외함
	위탁교육비 (201-31)	1. 민간기관에 위탁교육 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 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 다만, 필요한 경우 입교 시 집행
	운영수당 (201-32)	1.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 -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직원의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수당만 지급함 2. 심사수당 - 법령·조례, 기관 규정 등에 따라 지급 - 위원회 등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 다만 해당 기관의 직원이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효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 3. 일·숙직비 -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로 개산금(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 - 일·숙직비 단가(1일당 및1야당 50,000원 이내) ※ 재택근무를 하는 경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시험관리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 5. 강사수당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6.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 공식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 ※ 원고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
	임차료 (201-33)	1.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 2.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 3.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공공운영비 (201-02)	1. 전화,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는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 2.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
	행사운영비 (201-03)	1. 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단가는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 2.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음
여비 (202)	국내여비 (202-01)	1. 기관의 여비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 ※ 공무원 여비규정 ▶ 운임비 : 실비 ▶ 숙박비 : 실비(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한도) ▶ 일비 및 식비(1일당) : 25,000원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국외업무여비 (202-03)	1. 기관의 여비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
업무 추진비 (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시책업무추진비 (203-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업무추진비 공통기준>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각종 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다과, 음료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가족 모임 등 사적 목적 사용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 개인명의로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디과재료의 구입 ▸ 축의·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기관장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가) 소속 직원 나)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해당 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 소속 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직원 중 청소근로자, 운전원 등 현장 근로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연말, 설, 추석 또는 소속 직원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성 있게 지원 3. 시책업무추진비 -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해당 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해외기관, 공공단체·민간단체·학회·협회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기관 내 과·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서, 과 형태의 보조기관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 집행
직무수행경비	직책업무추진경비 (204-01)	1. 과장 또는 부서장 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 2.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204)		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
	특정업무경비 (204-02)	1. 기관 내부 규정 및 지방보조사업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
일반 보전금 (301)	외빈초청여비 (301-09)	1. 외빈초청경비는 당해 기관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 버스 임차료 등에 한하여 집행 2.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집행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 주빈 250천원, 수행원 75천원 - 식비 : 주빈 50천원, 수행원 30천원 - 지방시찰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행사실비지원금 (301-11)	1. 기관 직원이 아닌 행사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 -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원칙 2.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이 경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3.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 4. 기관 직원이 아닌 참여자에 대한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하며,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에 준하여 지급
	기타보상금 (301-14)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에 집행

※ 물품·용역·공사 등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06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박근현 → (주)웰리치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58동 1502호 →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70		
점용 위치	○ 창평동 967-6 인접도로	노선명	○ 중3-97
점용 목적	○ 하수관로 매설공사	점용 면적	(당초) ○ L = 1.5m ○ A(일시) = 5.1m² ○ A(계속) = 1.8m² (변경) ○ L = 2.0m ○ A(일시) = 9.9m² ○ A(계속) = 1.7m²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7. 29. ~ 2026. 8. 13. (15일)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 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152번지 (산음1길 107)	하**	무단신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10,449,000원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10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조재홍(지오테크)			
주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남로 1737-15, 111동 405호(경주외동미소지움아파트)			
점용 위치	○ 상안동 651-7번지 인접도로 (상안동 646-1)	노선명	○ 소3-14	
점용 목적	○ 하수관로 매설공사	점용 면적	(당초) ○ L = 8.9m ○ A(일시) = 16.02㎡ ○ A(계속) = 233㎡	(변경) ○ L = 9.5m ○ A(일시) = 17.1㎡ ○ A(계속) = 239㎡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5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